

의안번호	제501호
의 결 연 월 일	2013년 월 일 (제322회)

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김영주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3년 6월 19일

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영주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01
------------	-----

발의 연월일 : 2013년 6월 19일
발의자 : 김영주, 이광진, 김종필,
강현삼, 김재종, 박문희,
임현경 의원

1. 개정이유

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
를 위해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을 “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개정
- 나.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 조항 신설
(안 제6조)

3. 조례안 : 붙임

- 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5. 관계법규 : 붙임
- 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- 7. 관련부서 협의 : 바이오환경국 환경정책과와 협의
- 8.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 (13. 5. 30. ~ 6. 18.)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를 “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환경보전 기금”을 “환경보전기금”으로 한다.

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며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위원의 제척 · 기피 · 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/u> <p>제2조(기금조성) 충청북도 <u>환경보전 기금</u>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u>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/u> <p>제2조(기금조성) ----- <u>환경보전기금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6조(위원의 제척 · 기피 · 회피 등)</u>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</p> <p>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</p> <p>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.</p>
<u>제6조 ~ 제10조 (생략)</u>	<u>제7조 ~ 제11조 (각각 현행 제6조 ~ 제10조와 같음)</u>

관 계 법 규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현 행 조례

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(제정) 2006-05-12 조례 제 2925호

(일부개정) 2008-01-01 조례 제 3053호 (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)

(일부개정) 2010-06-30 조례 제 3265호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

(일부개정) 2010-08-11 조례 제 3276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

(일부개정) 2011-12-30 조례 제 341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

(일부개정) 2012-10-10 조례 제 3507호

(일부개정) 2013-04-25 조례 제 3547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」 제25조에 따라 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. 6. 30, 2012. 10. 10>

제2조(기금조성) 충청북도 환경보전 기금(이하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0. 6. 30, 2012. 10. 10>

1. 충청북도 일반회계 출연금
2. 「환경개선비용부담법」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
3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
4.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비용교부금
5. 순환수렵장 운영 수익금
6. 기금의 운용 수익금
7. 그 밖의 수입금

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기금은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기금중 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 10. 10>
② 기금의 수입·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하고,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, 지원명부, 현금출납부 등을

비치하여야 한다.

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바이오환경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, 환경정책과 업무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.<개정 2008. 1. 1, 2010. 6. 30, 2010. 8. 11, 2011. 12. 30, 2013. 4. 25>

제4조(기금의 사용 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6. 30, 2012. 10. 10>

1. 「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」 제24조에 따른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등
2.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원에 의한 사업 또는 활동지원
3. 충청북도 청풍명월21 실천협의회 운영 지원
4. 생태계, 생물종의 보존·복원사업 및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의 설치 운영
5. 야생동물보호 관련 사업
6.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관련 사업의 지원

제5조(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여 운영하되, 충청북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.<개정 2012. 10. 10>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12. 10. 10>

1.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
2. 기금운용 결산보고
3.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

제6조(회의)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.<개정 2012. 10. 10>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제7조(수당 등의 지급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.

제8조(기금운용계획·결산보고) ① 도지사는 회계 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 10. 10>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 연도 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 10. 10>

제9조(기금의 존속기한)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[본조신설 2012. 10. 10]

[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<2012. 10. 10>]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제9조에서 이동<2012. 10. 10>]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8. 1. 1 조례 제3053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6. 30 조례 제3265호 충청북도입법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8. 11 조례 제327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 12. 30 조례 제341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)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이하생략

부 칙(2012. 10. 10 조례 제3507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4. 25 조례 제3547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)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이하생략